

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

※ 3 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해당하는 내용 앞의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신청인 (개인)	성명 (서명 또는 인)		주민등록번호
	주소 (시·도) (시·군·구) ※ 시·도, 시·군·구까지만 작성 (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)		
	대상자와의 관계		연락처
	[]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※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 쪽 유의사항 3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
신청인 (법인)	기관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연락처
	소재지		
	방문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
열람 또는 등· 초본 교부대상 자	※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 성하지 않습니다.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주소		
👁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.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열람		☐ 등본 사항	☐ 초본 사항	
※ 개인정보보호를위해아래의등·초본사항중필요한사항만선택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. 포함여부 를선택하지않을경우신청인또는교부대상자의성명, 생년월일, 주소등기본적인사항만제공됩니다.				
		☐ 등본 사항 전부 포함 ☐ 초본 사항 전부 포함		
등본 교부 []통	1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☐ 전체 포함 ☐ 직접 입력: 최근 년 포함		
	2. 세대 구성 사유	☐ 포함		
	3. 세대 구성 일자	☐ 포함		
	4. 발생일 / 신고일	☐ 포함		
	5. 변동 사유	☐ 포함(☐ 세대, ☐ 세대원)		
	6.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 · 세대원 · 외국인등의 이름	☐ 포함		
	7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☐ 포함(☐ 본인, ☐ 세대원)		
	8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	☐ 포함		
	9. 동거인	☐ 포함		
	초본 교부 []통	1.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	☐ 포함	
2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	☐ 전체 포함 ☐ 직접 입력: 최근 년 포함		
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		☐ 포함		
4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	☐ 포함		
5.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		☐ 포함		
6. 발생일 / 신고일		☐ 포함		
7. 변동 사유		☐ 포함		
8. 병역 사항		☐ 포함(☐ 기본(입영/전역일자), ☐ 전체)		
9. 국내거소신고번호 / 외국인등록번호		☐ 포함		
용도및목적				
증명자료				
「주민등록법시행령」 제 47 조및제 48 조에따라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·초본교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				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※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[]에 √ 표를 합니다. [] 1.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에 따른 증명서류 [] 2.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, 독립유공자 정보, 국가유공자 정보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, 참전군인 정보, 5 · 18 민주유공자정보, 특수임무수행자 정보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※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[]에 √ 표를 합니다. [] 3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	
본인정보 제공 요구서				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의 2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 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 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법원행정처장 귀하				
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※ 해당란에 √ 표시합니다.				
[] 1.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의 2 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2.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
신청내용

유의 사항

1.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31 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2. 본인·세대원이 본인·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“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”에 자필 한글 성 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3.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법 제 29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
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다.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라.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바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- 아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5 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- 자.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7 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차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카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5 조 또는 제 5 조의 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타. 미성년자인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)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
 - 파.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 통 발급하는 경우
 - 하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
4. 신청인은 “신청 내용”란의 각 항목에서 “포함”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 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6. “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”을 “직접 입력”으로 선택하는 경우, 그 기간은 1 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.
7.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“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” 항목은 대상자가 성 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,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 속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“포함”을 선택할 수 있고, “8. 병역사항” 항목은 본인 이나 세대원(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, 「주민등록법」 제 2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가족,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“포함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8.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·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“용도 및 목적”칸을 작성하여야 하며,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9. 「주민등록법」 제 37 조제 5 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 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10.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 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과 별지 제 8 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 7 호서식과 별지 제 8 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(서명 포함)이 있어야 합니다.
11. 신청인이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31 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」 제 6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